

< 근로소득 >

1. 근로소득의 의미

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함
(현금, 현물 포함)

2. 근로소득의 범위

-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, 상여,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
- ② 법인의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(잉여금처분상여)
-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(인정상여)
- 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

3.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

3.1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

고용관계 등으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됨

구분	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
①	임원, 사용인의 주택구입·임차자금 저리 및 무상 대여이익 *
②	기밀비등 업무사용여부 불분명한 급여
③	연월차수당, 근로수당, 가족수당 등 각종수당
④	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급여
⑤	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 - 퇴직공로금, 퇴직위로금 : 원칙은 퇴직소득이나,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이 지급하는 경우는 <손금불산입> (인정상여) -> 근로소득에 해당
⑥	해당 법인 및 그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- 근무기간 중 행사시 : 근로소득 - 퇴사 또는 고용 관계없이 부여 받아 행사시 : 기타소득

3.2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

구분	내용
사택제공이익 (p62 ③)	- 출자임원(상장법인 소액주주임원 제외)에 대한 것 : 근로소득 ○ * - 위 외의 자에 대한 것 : 근로소득 ×
종업원부담 보험료의 사용자 대납액 (p62 ⑤, ⑦)	- 원칙 : 고용관계이므로 근로소득 ○ - 예외 : 다음의 보험료 대납액은 근로소득 × ① 단체 순수/환급부 보장성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임직원의 고의·중과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보험금의 보험료
기타	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 : 근로소득 ×

* 주택자금 대여이익과 사택제공이익의 과세대상자 비교

구분	출자임원	그 밖의 임원 · 사용인
주택의 구입 · 임차자금 대여이익	근로소득 ○	근로소득 ○
사택제공이익	근로소득 ○ (상장법인 소액주주제외)	과세 ×

4. 비과세 근로소득

(1)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등으로 받는 배상·보상·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등

(2) 학교(외국 교육기관 포함) ·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학자금

- 비과세 한도(근로자 본인만 해당)

- ①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· 훈련을 받을 것
- ②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
- ③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후 초과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받을 것

- 한도 :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

(3)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

구분	내용
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되는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자가운전보조금(차량유지비) * ② 학교의 교원과 특정 연구기관의 연구요원 및 중소기업 등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연구활동비 ③ 벽지수당 ④ 선원의 승선수당 ⑤ 기자(논설위원, 만화가 포함)의 취재수당 ⑥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
한도없이 비과세되는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일직료, 숙직료, 여비 ② 작업복, 직장 피복 ③ 천재 · 지변 그 밖의 재해로 받는 급여 ④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,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,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⑤ 그 밖에 법에 정한 것

*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

- ① 종업원 소유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
- ②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경비를 받지 않을 것
- ③ 지급기준에 의하 받을 것

(4) 국외 등(국외·북한지역) 근로 급여

- ① 원칙 : 월 10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
- ② 원양어선, 국외 등 항행선박, 국외 등 건설현장(감리 포함) : 월 30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

(5) 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

구분	내용	
적용대상	국민건강보험료 · 고용보험료 · 노인장기요양보험료	
처리방법	사용자 부담금	비과세
	사용인 부담금 *	부담한 금액을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공제로 공제(p243)

* if) 사용인 부담금까지 사용자가 대납한 경우 : 근로자가 급여를 받아 납부한 것으로 봄
->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하고 보험료 공제로 공제함을 말함

(6)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은 시간외 근무수당 등

1) 적용대상

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받는 시간외 근무수당

- ① 생산직 근로자, 운전원 · 수하물 운반종산자, 어업종사자
- ②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
- ③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2,500만원 이하

- ▶ 광산 : 전액비과세
- ▶ 그 외의 자 : 연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

2) 월정액 급여의 계산방법

$$\text{월정액 급여} = \text{월 급여총액} - \text{상여 등} - \text{비과세되는 부정기적 급여} - \text{시간외 근무수당 실비변상적 급여}$$

(월기준)

(7)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

- ① 사내급식, 인근식당 식사쿠폰 등으로 제공받는 경우 : 전액 비과세
- ② 식사대로 받는 경우 : 월 10만원 이내는 비과세(10만원 초과분은 과세)
- ③ ①, ②를 모두 받는 경우 : ①은 비과세, ②는 과세

(8) 월 10만원 이하의 출산 · 보육비

다음의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

- ①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의 출산으로 받는 급여
 - ②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
- (판단기준일 : 해당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 여부 판단)

5. 근로소득금액

근로소득금액 = 총급여액(비과세 근로소득 제외) - 근로소득 공제액(p70)

* 일용근로자

-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(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이상 등)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
- 일용근로자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액
(일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 : 일 10만원) × 6% - 근로소득세액공제(산출세액의 55%)

6. 수입시기

구분	수입시기
급여 · 인정상여	근로를 제공한날
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	잉여금처분결의일
임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	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

7. 근로소득의 과세방법

7.1 원천징수 여부

- 원칙 :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임
- 예외 : 다음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
 - ① 외국기관,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(미군 제외)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
 - ②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(국내지점, 국내영업소 제외)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

7.2 과세방법

(1) 상용근로자

- ① 1월 ~ 12월까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
- ②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 1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
- ③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
 - 없는 경우 : 확정신고 ×
 - 있는 경우 : 확정신고 ○

(2) 일용근로자

- ①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(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이상 등)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
- ②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
일용근로자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액
(일급여액 - 일 10만원) × 6% - 근로소득세액공제(산출세액 × 55%)

